

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사항

◇ 산업체의 범위

제8조(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)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(이하 “현장실습산업체”라 한다)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,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, 현장실습 시설·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

[전문개정 2011. 6. 7.]

※ 산업체 선정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① 산업체와의 협의 및 선정, 현장실습 지도 등 **제반사항은 학과에서 담당**

② 관련법 및 시행령에 맞는 **산업체 현장실습에 적합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**

③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산업체와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

④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산업체의 경우에는 **공문 등을 이용하여 현장실습 의뢰 및 허가를 받아야 함** :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발송 요청

⑤ ‘사업자등록증사본’에는 **‘원본대조필’과 산업체 대표의 날인** 이 있어야하며,

⑥ 현장실습결과보고서, 실습생출근부 등 산업체 대표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 곳에는 아래와 유사한 형식의 **고무인(사업자등록번호, 산업체명, 대표자명 등 포함)과 직인 [산업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실명이 기재(확인)된]이 날인**되어 있어야 함.

617 - 05 - 55×××
(주) ※ ※ ※ 성 춘 향 (인)
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80-8
서비스 케이블 공사

○ ○ 종합 건설 주식회사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××××동 318-14
전화 : (051)851- ○ ○ ○ ○
대표이사 홍길동 (인)